

[様式 第7号]

親養子罷養(養子離縁)申告書 친양자 입양신고서

(年 月 日) (年 月 日)

※ 下記の作成方法を読んで記入し、選択項目は当番号に“○”で表示して下さい
신고서 작성시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区分	구분	養 父 양 부				養 母 양 모				
① 養父母 양친	姓名 성명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한자)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한자)	ハングル 한글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ハングル 한글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漢字 한자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漢字 한자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漢字 한자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漢字 한자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所 주소			
	住所 주소									
② 養子	姓名 성명	ハングル 한글	本貫(漢字) 본(한자)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漢字 한자	性別 성별	①男 남 ②女 여	生年月日 출생연월일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住所 주소			
	以前の姓 중전의 성		ハングル 한글	漢字 한자	以前の本人 중전의 본	ハングル 한글	漢字 한자			
	復活した姓 변경된 성		ハングル 한글	漢字 한자	復活した本人 변경된 본	ハングル 한글	漢字 한자			
③復活する父母 (養父母) 친양자의 친생부모	父 부	姓名 성명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母 모	姓名 성명	登録基準地 등록기준지		-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④その他事項 기타사항										
⑤裁判確定日 재판확정일자		年	月	日	裁判所名 법원명					
⑥申告人 신고인	姓名 성명	㊦又は 署名 인 또는 서명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資格 자격	① 訴訟提起者 ① 소 제기자	② 訴訟の相手方 ② 소의 상대방	③ その他(資格 :) ③ 기타(자격 :)						
	住所 주소						Eメール 이메일			
	電話 전화						Eメール 이메일			
⑦提出人 제출인		姓名 성명				住民登録番号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 登録基準地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住民登録番号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出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欄 及び ②欄 : 法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た時には出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できます。
-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欄 :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 ⑥欄 : 親養子罷養(離縁)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には訴訟提起者または、訴訟の相手方の単独で申告できます。この場合には該当項目番号に“○”で表示した後、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ます。
- ⑥란 :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 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 합니다.
- ⑦欄 : 提出者(申告人か否かは不問)の姓名および住民登録番号記入[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と対照]
- ⑦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할미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서류

- ※ 下記の1項は家族関係登録官庁で電算システムでその内容を確認できる場合、添付を省略します。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 1. 親養子罷養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親養子縁組関係証明書各1通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2. 「民法」第908条の5により親養子罷養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には裁判の謄本および確定証明書各1通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3. 事件本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 : 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または外国人登録証)1部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1부
 - 3.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23号による]
 - 申告人が出向いた場合: 身分証明書
 - 提出人が出向い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郵便提出の場合: 申告人の身分証明书写本
- ※ 申告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には、4項の書類のほか、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의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의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